

「평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위

- 제안일자 및 제출자 : 2016. 2. 18(목) 평창군수(도시주택과장)
- 회부일자 : 2016. 04. 14(목)
- 상정일자 : 2016. 04. 27(수) 제217회 평창군의회(임시회)

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상정·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자 : 도시주택과장 김찬수)

- 상위법령에 합치하지 아니하는 부분을 개정하여 위법성을 해소하고 법에 합치하는 군정을 구현하고자 함.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

(전문위원 : 오정희)

-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사항과 상위법령에 따라 위원회 구성의 하한 규정을 반영하였으며, 상위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연임제한 규정을 삭제한 것으로,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심사결과 : 원안의결

6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【붙임】 평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평창군 조례 제 호

평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조의2(지역특화발전특구 옥외광고물 등의 특례) 군수는 법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「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」 제3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지역특화발전특구(이하 “특구”라 한다)에서 특구의 홍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특구계획에 반영된 특구 및 특화사업 홍보를 위한 시설의 광고물 등은 영 제24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지역 및 장소에 [별표 7]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.

제12조제1항 중 “9명”을 “5명 이상 9명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“하고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”를 “한다”로 하며, 같은 조 제9항제1호 중 “위원장 또는 부위원장”을 “위원장”으로 한다.

별표7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